

의안번호	2212618
의 회 인	김남근의원
회 답 일	2025.9.16.
추계번호	25D475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7조의2 (불공정거래피해 구제기금의 설치)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비자(이하 “피해자”라 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원하고 피해자의 권익증진과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107조의3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함(제1항) 1. 제2항에 따라 귀속된 과징금 2. 제4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사업자의 출연금 3.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4. 기금을 운용하여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의무규정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하는 과징금 중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은 기금에 귀속됨(제2항)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의무규정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이행하는 사업자는 그 이행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음(제4항)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9조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9	재량규정
3	안 제107조의4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함(제1항) 1.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사업 2. 피해자의 권익증진과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조사·교육·홍보	의무규정

		3. 제107조의3제4항에 따라 동의를결 이행사업자가 위탁한 사업 4.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피해자 권익증진,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4	안 제107조의5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피해구제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를 둔(제2항)	의무규정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징수·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피해구제 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07조의2 (불공정거래피해구제기금의 설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07조의3 (기금의 조성)	
3	안 제107조의4 (기금의 용도)	
4	안 제107조의5 (기금의 관리·운용)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하는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여,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사업 등에 기금을 사용하려는 것임

- 안 제107조의3제1항¹⁾에 따르면, 기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20% 범위, 개별 법률에 따라 동의의결을 이행하는 사업자의 출연금, 정부 등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안 제107조의4²⁾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구제, 피해자의 권익증진과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조사·교육·홍보, 동의의결 이행사업자가 위탁한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기금의 재원이 되는 과징금은 전액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는데, 그 징수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안 제107조의3제2항에 명시된 과징금의 징수 현황: 2020~2024년
(단위: 백만원)

법률명(약칭)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가맹사업법	427	2,911	875	1,853	1,713	7,779
유통업법	47,626	13,678	6,852	4,199	2,292	74,647
대리점법	—	—	751	377	—	1,128
공정거래법	217,393	752,955	727,603	576,869	271,004	2,545,824
방문판매법	—	—	—	—	—	—
전자상거래법	105	—	—	—	11,740	11,845
표시광고법	292	1,887	21,731	37,911	2,980	64,801
하도급법	10,535	24,378	47,949	6,174	11,838	100,874
할부거래법	—	—	—	—	—	—
합계	276,378	795,809	805,761	627,383	301,567	2,806,89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 1) 제107조의3(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라 귀속된 과징금
 2. 제4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사업자의 출연금
 3.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4. 기금을 운용하여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 2) 제107조의4(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사업
 2. 피해자의 권익증진과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조사·교육·홍보
 3. 제107조의3제4항에 따라 동의의결 이행사업자가 위탁한 사업
 4.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피해자 권익증진,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 개정안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금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과징금 수입 외에도 사업자, 정부 등의 출연금, 지출 사업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의 예방·구제 사업의 규모, 피해자의 권익증진과 피해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교육·홍보 등 사업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없음
-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의 수입과 지출사업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예산은 다음과 같이 편성되어 있음

[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예산 내역: 2024~2025년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		2025
		예산	결산	예산
카르텔환경개선(카르텔환경개선)		791	738	842
독과점시장환경개선		5,331	3,718	5,557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3,320	1,738	3,470
	사익편취 행태개선	370	356	402
	기업집단포털시스템 운영	1,641	1,624	1,685
시장구조개선(경쟁제한 규제개선)		642	586	629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업설명자료(Ⅱ-1)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